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개정안

□ 개정취지

○ **정책자금 수요증가**에 따른 온라인 신청 **조기마감**으로, 신청기회를 놓친 **기업의 불만 증가 및 자금계획 차질** 우려

* '15.1월 경기지역 신청 시 6,926명(9:00분~9:05분) 동시접속 ⇒ 2,027건(29.2%) 접수

-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**모든 기업에 사전상담을 지원**하고, 정책목적에 맞는 **실수요자를 발굴·지원**함으로써 **불확실성 해소**

○ 재도전 기업인의 **실패사례 답습**과 재창업 **준비 부족**으로 **자금 부실률이 일반창업 자금의 2배 수준**(재창업 6.17%, 일반창업 3.47%)

- 재창업자금 부실률 개선을 위해 **자금 지원결정 단계**에서 **재창업자 역량 향상 교육 연계 필요**

□ 주요 변경내용

○ **(신청방식)** 격월 온라인 선착순 접수 → **월별 상시 상담·접수**

- **전월말**까지 **자가진단 및 사전상담**을 진행하여 **자금신청을 접수**하고, **당월말**까지 접수분에 대한 **기업평가 및 대출 실행**

* **(자가진단)** 자금신청 희망기업이 융자제한 및 자금별 요건 등을 확인
* **(사전상담)** 사업내용, 지원 요건, 대출가능성 등을 검토해 현장조사 여부 결정

○ **(융자제한)** **융자제한기업 중 적용예외 기업**에 대한 **상환가능성 검증 강화,** 융자심사 탈락 시 **신청연도 내 재신청 금지**

○ **(재창업자금 융자조건)** **융자결정 기업**에 대해 **지정교육 수료 후 자금대출** 실행

* 교육 미수료자(교육평가 60점이하 포함)는 대출 제한(대출기한 경과시 실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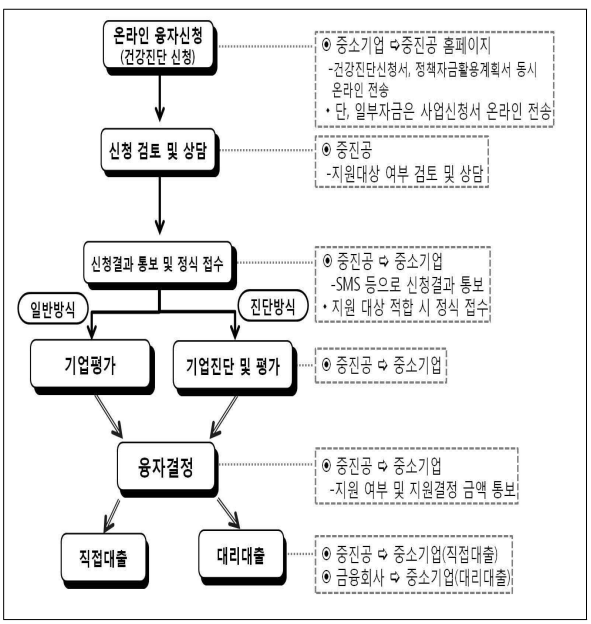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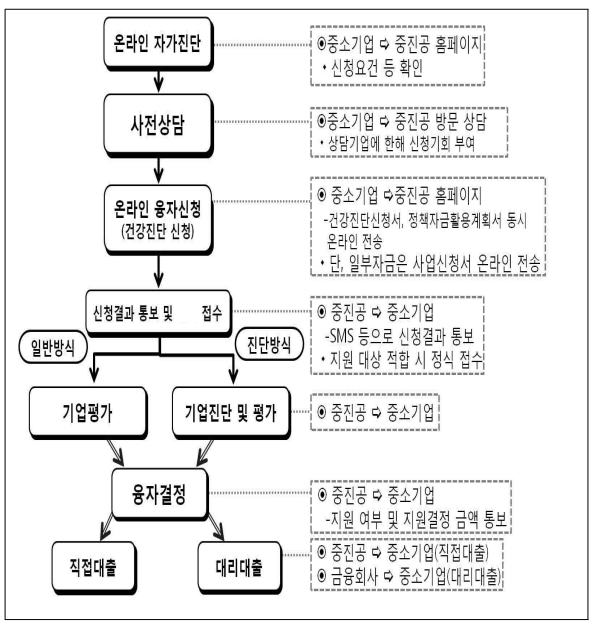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조치계획

○ **「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」 개정 공고** 및 **시행**('15. 4. 20 ~)

※ 붙임 :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개정안(신구대조표). 1부

붙 임 **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내용**

현 행	개 정 안
1. 공통사항	**1. 공통사항**
가. ~ 다. <생략>	**가. ~ 다. <현행과 같음>**
라. 융자 절차	**라. 융자 절차**
□ 융자 신청·접수	□ 융자 신청·접수
○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(지)부에 융자신청	○ 자금신청 희망일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진행
* 온라인 상에서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,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하며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	* 단, '15년 5월 신청은 5.8일까지 사전상담을 진행하고, 5.11일부터 접수 개시 * 소공인특화자금(수탁사업) 포함
	- **(자가진단)**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
	*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융자신청 제한
	- **(사전상담)**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, 해당 지역본(지)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
	○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(지)부에 융자신청
	*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
< 사전상담 필수기업 > 청년전용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,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),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, 신성장기반자금(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, 고성장(가젤형)기업전용, 기초제조기업성장), 재도약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, 창업을 준비 중인자	
마. 융자제한기업	**마. 융자제한기업**
⑨ 융자 신청일 현재,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	⑨ ----------
• 2년 연속 매출액이 50%이상 감소한 기업 •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• 3년 연속 '이자보상배율 1.0 미만'이고, 3년 연속 '영업활동 현금흐름이 (-)'인 기업 •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• <신설>	• ---------- • ---------- • ---------- • ---------- •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(CR6) 등급 (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)

현 행	개 정 안
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(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)	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해당 신청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*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, 재해자금은 제외
바. 접수 시기	**바. 접수시기 예외**
○ **(정기 접수)** 1회차는 2015. 1. 5(월)부터 접수, 2회차 이후(3월, 5월, 7월, 9월, 11월)부터는 매 격월별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-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(2월, 4월, 6월, 8월, 10월)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	○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접수 마감 ○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(5월, 7월, 9월, 11월) 접수
○ **(수시 접수)**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	○ **(수시 접수)**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
•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, 프로젝트금융형 대출) • 신성장기반자금(협동화 및 협업사업, 고성장(가젤형)기업지원자금) •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 • 재해중소기업, 일시적경영애로기업,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	•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) *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• 신성장기반자금(협동화 및 협업사업) •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 • 재해중소기업,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
<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>	<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>
	

현 행	개 정 안
*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(성장공유형 대출,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),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, 신성장기반자금(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, 고성장(가젤형) 기업전용, 기초제조기업성장), 재도약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,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상담 필수	* <삭제>
5 재도약지원자금	5 재도약지원자금
마. 융자조건	마. 융자조건
○ 융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	○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* 구조개선전용자금,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	* ---------- ----------
- (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)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(평가등급 미생성)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	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- <신설>	- 재창업자금(융자상환금조정형 포함)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